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(전예슬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(안 제2조)
- 직무 및 직무수행의 제한(안 제3조 및 제4조)
- 비밀엄수의 의무(안 제5조)
- 교육훈련(안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6월 5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3
 - 전자메일 : aragu@korea.kr

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용 및 배치) 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.

④ 정책지원관의 임명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·배치·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.

제3조(직무 및 지휘·감독)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·수집·분석

및 지원
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7분 자유발언·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·자료 작성·참석 지원
6.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분석 및 연구 등 지원
7.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

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4조 (직무수행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.

1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2.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
3.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
4. 선거·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·지원이 포함된 사항
5. 제3조제1항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

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엄수 의무)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

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6조(교육훈련)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